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 기본방향*

鄭 燦 宇 (先任研究委員, 3705-6270)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외환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의 개정은 업종간 구분의 의미가 퇴색한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여신금융업(가칭)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고 여신금융회사가 이들 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금융을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에 포함시키고, 부수업무의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각각의 여신금융회사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완화가 여신금융회사의 부실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건전성감독 강화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년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할부금융업법, 신기술금융지원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동법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감소로 인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역할변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격이 상이한 금융회사를 동일한 법으로 규제함에 따른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법 하에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요 업무와 특징, 규제체계를 간략히 살피고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업무 및 특징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외환위기 이후의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병행하는 금융회사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신용카드사는 이 외에 기업 매출채권의 양수 · 관리 · 회수업무, 지급보증,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등을 기본 업무로 수행하고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대금결제 등의 부대업무도 영위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사는 매분기말 대환대출채권을 제외한 현금대출채권(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분기평균잔액이 신용판매채권의 분기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부대업무의 비중이 제한된다(법 제13조 제1항, 제46조, 시행령 제6조의5, 시행령 제16조).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되며, 길거리 모집은 금지되고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사가 실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별적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법 제14조, 제16조의2,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6조의7).

할부금융사는 할부금융을 주 업무로 영위하고 학자금, 의료비, 전세자금 등 가계의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법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 제46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설대여, 할부금융과 같은 등록업무 외에도 기업매출채권의 양수 · 관리업무,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리스사는 시설대여를 주 업무로 영위하며 시설대여 취급대상은 시설 · 건설기계, 차량, 선박, 항공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재산권 등이 있다. 리스사는 연간 리스 실행액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용해야 한다(법 제2조 제9호, 제37조, 시행령 제13조의2, 시행령 제2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 ·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 운용을 주 업무로 영위한다(법 제41조 제1항). 또한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CRC업무와 PEF의

집행사원업무를 겸영업무로 취급할 수 있다(감독규정 제7조의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주식투자, 사채인수, 조건부 대출[1]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식투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보통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채인수는 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대출에 비하여 저리로 운용되고 있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대출업무는 원화 및 외화 모두 가능하나 자금의 용도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제한된다.

한편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모두 신용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지급보증, 유동화자산 관리 등 앞에서 언급한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16조의 업무도 기본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들 회사는 분기말 기준으로 어음할인을 포함한 대출채권의 분기평균잔액이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등록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과 팩토링 채권의 분기평균잔액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17조).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채권은 신용판매채권보다 커서는 안되며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업무 관련 채권과 팩토링채권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제 및 감독

진입과 관련하여 전업카드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 등록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이상, 셋 이상일 경우는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해야 한다. 제재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거나 법을 위반할 때, 그리고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 때 과징금 부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 및 등록의 취소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57조).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은 겸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배 및 소유구조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신용카드사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신용카드사의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경

1) 조건부 대출방식은 계획사업의 성공 시에는 약정기간동안 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받으며, 실패 시에는 대출금 상환을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금융방식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그 본질을 감안하여 투자로 분류된다.

영을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예를 들어 국내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기자본 규모가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금은 차입을 통해 조달할 수 없다(시행령 제6조의3). 한편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법 제50조의4, 5, 6, 시행령 제19조의8).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사채발행의 특례를 인정받으며, 현행 법에서 소비자보호는 신용카드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차입, 사채나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상법상 회사와는 달리 사채발행을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48조, 시행령 제18조). 한편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규정은 고객정보 누출 금지, 불법 채권추심 금지, 도난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 귀속 등 모두 신용카드사에 관한 것이며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관련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법 제16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금융위원회는 법령 제·개정권을 포함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지도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53조, 제53조의3).

현행 법에 대한 평가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타 여신전문금융업종은 업종간 구분의 의미가 없고,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현 규제는 과한 측면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자금력 향상,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리스사와 할부금융사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자동차 할부금융과 자동차리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시설자금 공급이라는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의 도입취지가 크게 퇴색된 상황인데 현행 법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고 있어 업종간 구분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07년말 현재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50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1개 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12개사에 불과하고 24개사가 2개 업무를, 그리고 14개사가 3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단기 신용공여를 통해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과거 신용카드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리스크관리를 수반하지 않은 규제완화

는 과잉신용공여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수신기능이 없어 부실화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은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현재의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금융업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요구가 높은데 현행 법 내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법 개정의 기본방향

우선 신용카드업과 기타 여신전문금융업을 구분하고 겸영으로 인해 업종간 구별의 의미가 없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한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하여 현행 법을 「신용카드업과 여신금융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는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을 모두 수행하도록 한다.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업종은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고 소비자금융을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에 포함하는 한편 부수업무의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에 기존의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외에 소비자금융을 포함하여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대출업무가 여신금융기관의 핵심업무로 부각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금리의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된다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져서 대부시장의 폐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수업무의 범위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각 금융사별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서민층 소액신용공여, 기업대출에 있어서 과잉신용공여에 따른 여신금융회사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전성감독 강화방안도 규제완화와 더불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 범위도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카드의 결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는 거래의 투명성 훼손, 세수감소, 신용카드사의 경영기반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에서 인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KIF